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22

발의연월일: 2023. 3. 16.

발 의 자:서영교·양경숙·신정훈

이용빈 • 윤준병 • 양정숙

한정애 · 한병도 · 임오경

김영호·허 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,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연설·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일률적·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(2018헌바357).

이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·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03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 중 "討論會를"을 "토론회(이하 이 조에서 "연설회등"이라 한다)를"로 하며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8조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연설회등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8조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 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第101條(他演說會 등의 금지) 누 第101條(他演說會 등의 금지) ---구든지 選舉期間중 選舉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연설・대담 또는 對談・討論會를 제외하고 는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個人 政見發表會・時局講演會・座談 會 또는 討論會 기타의 演說會 -----토론회(이하 이 조에 나 對談・討論會를 개최할 수 서 "연설회등"이라 한다)를---없다. <u><단서</u> 신설> -----. 다만, 제58조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연설회등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. 第103條(各種集會 등의 제한) ① 第103條(各種集會 등의 제한) ① · ② (생 략)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· 종친회 · 동창회 · 단합 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 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 ---. 다만, 제58조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 <단서 신설> 회나 모임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④ · ⑤ (생 략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